



“자원순환을 넘어 에너지기업으로”

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

KOREA RESOURCE-RECYCLING ENERGY MUTUAL-AID ASSOCIATION



수신 전 조합원사 및 매립협회 회원사 대표이사
[대표이사 메일송부 병행문서]

참조 자금·회계 담당

제목 「매출비례 징벌적 과징금 제도 시행」 관련 손익계산서 매출
내역 구분 결산 요청

1. 한공조 2020-246호[「영업정지 같음 징벌적 과징금 제도 개선 추진 간담회」 자료 송부 및 추가 의견 제출 요청(긴급), '20.6.18]와 관련입니다.

2. '20.5.27 개정·시행된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은 영업정지 같음 과징금을 영업정지 직전 3개연도 연평균 매출액의 최대 5% 이내로 부과하고 있으며, 그 기준을 영업정지 대상 폐기물처리업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.

3. 이와 관련하여 조합원사 및 회원사에서는 부득이하게 발생할지 모르는 영업정지 같음 과징금 산정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향후 법인 결산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 매출액을 포괄매출이 아닌 ① 소각·매립·재활용·수집 운반·스팀판매·전력판매·고철판매·임대업 등 계정과목별로 구분하여 표기하고, ② 지정 및 일반폐기물 매출도 별도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끝.

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이사장



담당 김정훈 운영지원팀장 임연정 상무 장기석 부이사장 김상배 이사장 박무중
협조자

시행 한공조 2020 - 301호 (2020. 7. 17) 접수

우 04508 서울시 중구 중림로 50-1 13층(만리동1가, SKY1004빌딩)

전화 02-718-7900

전송 02-718-7171 / krema@krema.kr

/ www.krema.kr

/비공개